

# 새로운 도서관 문화 창출 기반으로서의 개정 「도서관법」



글\_ 이용훈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 도서관문화비평가

지난 9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1년여를 끌어온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미경의원등 47인 발의)이 표결로 처리되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10월 4일 정부가 공포함으로써 공포 후 6개월 후인 2007년 4월 5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이번 법률개정은 몇 가지 주요한 변화를 담고 있다. 우선 법을 개정한 이유로 “도서관이 국가 지식 인프라의 핵심기반이자 국민의 자발적인 문화체험·학습공간이 되고 지식정보 활용능력의 제고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의 장으로 기능할 것이 요구되는 등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며, 도서관을 국민을 위한 핵심적인 정보문화센터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는 도서관이 중요해졌지만, 현실의 도서관들은 이같은 중요성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서 법을 개정, 도서관을 도서관답게 만들고자 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도서관 발전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되어온 정책부서의 산재로 인한 체계적이고 종합적 정책 입안과 집행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으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이다. 이 위원회는 5년 단위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서관정책이 유기적으로 조정되고 통합될 수 있게 됨으로써 도서관정책에 있어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분권 강화에 발맞추어 도서관정책에서도 지역의 역할을 강화했다. 개정 법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운영하고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서관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다. 지역대표도서관

을 통해 지역 내 다른 도서관들을 돋고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의 주체적 도서관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외에도 공공도서관의 범주를 확대하고, 적용범위를 신설, 도서관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도서관에 이용자의 정보보호 의무를 명시하는 등 도서관이 이전보다 더욱 국민들의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도서관 문화가 개혁되고 발전하지는 않는다. 법 개정은 도서관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제 분야, 도서관계는 물론 중앙과 지방 행정당국, 그리고 유관기관은 물론 도서관을 이용하는 국민 개개인이 법 개정 정신과 법과 제도를 이해하고 실현하는데 함께 뜻과 노력을 모아야 그 참뜻의 실현이 가능하다. 새로운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지금의 제도나 운영방식을 과감히 탈피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개정 「도서관법」은 그같은 혁신이 시작된다는 출발신호일 뿐이다. 무엇보다도 도서관 스스로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좋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 자세로 도서관 발전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한편 법 개정으로 도서관 관련법과 독서진흥 관련 법이 분리되었다. 독서진흥 관련 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이번 회기 중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한다. 법 분리는 각자의 영역에서 보다 충실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도서관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핵심적인 독서진흥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법 개정을 계기로 획기적인 도서관 발전을 이룸으로써 출판계와 도서관계의 관계도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